<table>
<tr><td colspan="7">「학 교 운 영 위 원 회」 심 의 안 건</td></tr>
<tr><td>사 업 명</td><td colspan="3">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</td><td>일 시</td><td colspan="2">2022. 4. 14.</td></tr>
<tr><td>담당부서</td><td colspan="3">학교운영위원회</td><td>담당책임자</td><td colspan="2">교사 안효진</td></tr>
<tr><td>세
부
사
업
추
진
계
획</td><td colspan="6">1. 제정 취지
2022년도 포담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의 필요

2. 제정 내용
붙임 파일 참고

붙임 포담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. 끝.</td></tr>
<tr><td>심의내용
(보완, 변경 내용)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심의위원</td><td>교 원
위 원</td><td></td><td>학부모
위 원</td><td></td><td>지역사회
위 원</td><td></td></tr>
<tr><td>추진여부</td><td>찬 성</td><td>/</td><td>반 대</td><td>/</td><td></td><td>可 否</td></tr>
</table>

포담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22년 4월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,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62조,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 본 위원회는 포담초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포담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
제3조(위원의 정수 및 구성)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4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,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. 단, 학부모위원 중 1명은 병설유치원 학부모이어야 하고, 교원위원 중 1명은 병설유치원 교원이어야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자격)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③ 위원은 다른 학교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③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조(위원의 선출 시기)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한다.
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③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함

제7조(보궐선거)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선출관리위원회)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.
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9조(학부모위원의 선출)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식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
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하며,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 통지한다.
⑤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명의 가나다순대로 한다.
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.
⑦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선거 결과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.
⑧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공고를 한다.

제10조(교원위원의 선출)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④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

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게시판에 게시한다.
⑤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공고를 한다.

제11조(지역위원의 선출)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.
②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③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④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공고를 한다.
⑤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조직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·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의 자격 상실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·휴학·전학 및 퇴학한 때
   다만,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.
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4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5.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
제14조(위원의 의무)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

할 수 없다.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제3장 기능 및 심의

제15조(기능)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.
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학교와 관련된 이권을 가진 위원은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.

제16조(심의사항 등)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
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9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10.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1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
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,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13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15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사항
16.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 의결한다.

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 16조 1호, 7호, 8호 또는 1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,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받아야 한다.

제4장 회의 운영 등

제17조(회의소집)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① 정기회 소집은 연 2회에 운영한다.

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)

④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정규직관련 안건이 상정 될 시 학교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한다.

제18조(안건의 제출 및 발의)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)

② 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학생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 수렴 또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
제19조(서류 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20조(의결 정족수)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21조(회의 공개) 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22조(회의록 작성)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,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
제23조(소위원회 설치)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~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② 급식소위원회를 비롯한 필요한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.
③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예·결산 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24조(운영 경비) 위원의 연수경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
제25조(학교 내의 자생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 단,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
제26조(간사)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27조(회의 운영 규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장 규정의 개정

제28조(개정의 제안)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,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
제29조(규정의 개정)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,

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